국회정책토론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14:00~16:4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김종민 윤창현 양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주관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아시아태평양 한국사무소,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Korea Alli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협력 |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SN Youth Korea,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목 차

1. 여는 마당

인사말 및 축사 ---------- 06

2. 발제 마당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 22

-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 ---------- 39

-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前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3. 토론 마당 :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49

강동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간사 -- 52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운영위원 ---------- 75

부록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 행사 취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22.7) 이후 1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방향 논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성찰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새로운 과제 모색

□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23년 7월 26(수) 14:00~16:40

❍ 행사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양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 관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협 력 :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SN Youth Korea,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시 간	내 용
13:30-14:00 (´30)	**[내빈 차담회]**
14:00-14:20 (´20)	**[여는 마당]** 사회 : 추명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 허재영 전국지속협 상임회장, 김종민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축 사 :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기념촬영
14:20-16:30	**[정책 포럼]** 좌장 :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14:20-15:00 (´40)	**[발제 마당]** - 발제1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 - 발제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 - 두원공과대학교 방효창 교수(前,파주지속협 회장)
15:00-16:40 (´100)	**[토론 마당 1]** - 지정토론 :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강동렬 SDSN Korea 간사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운영위원
	[토론 마당 2] - 자유토론 : 참석자 질의응답
	[정리 마당] - 발제자, 지정토론자, 좌장
16:40	폐회

여 는 마 당

인 사 말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본법 시행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의 대표의원님으로 활동해주시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님과 국민의힘 윤창현의원님, 그리고 양정숙의원님께서 오늘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김홍장 공동대표님과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의 점검과 과제에 대해 발제해주실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무게 있는 주제를 전해주실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방효창 전(前)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SN Youth Korea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동회장이신 광역 지속협의 대표님들과 사무처장님들께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전환의 방향이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폭우와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김종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제1회 포럼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양정숙 의원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재영 상임회장님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박우량 신안군수님과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의 공동대표이신 김홍장 당진시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시는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된지 1년이 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한 의미는 단순히 녹색성장이라는 환경적 의제만을 격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자연적 위기 현상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자원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조를 만들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체와 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크고, 기회 역시 불균등하며, 상대적 약자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친환경적 발전·산업 체계 구축과 상생의 가치 등을 위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을 이끌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전통적인 기득권의 반대 논리에 편승해 개혁과제를 교묘한 정쟁의 대상으로 포장하며, 개혁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은 물론이고, 그 과정을 이행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참여해 합의한 SDGs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을 토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사회가 공감하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더는 그릇된 신념이나 극단적 정치이념에 지속가능발전의 대의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십, 지속적인 거버넌스 방안 마련의 주제가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간사 의원으로서 저도 갈등을 종식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유익하고 뜻깊은 토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말

윤창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2023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전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도 이 뜻깊은 행사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재영 상임회장님과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회장님들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지속발전기본법이 시행되고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시행 원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올해는 2015년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과 2030년까지 남은 7년 동안 어떤 과제들을 해소해 가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0일,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23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공동의 목표로 채택한 140개 세부목표 중 오직 15%만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목표는 이행 계획에서 벗어나 있고, 심지어 기준 시점인 2015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세부목표도 있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정책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략과 방향성을 재점검해야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점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또한 국내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모범국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 구체적인 달성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 구현 수준을 점검하는 노력도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 또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무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들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누구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양정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주최해주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김종민, 윤창현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추명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방효창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이형용 거버넌스 센터 이사장님, 정우탁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한국대표님, 강동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간사님,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위기가 가기도 전에 오랜 난제였던 기후위기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기후위기가 더 빨리 체감되자 정부, 산업, 민간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집단은 ESG라는 사회적 가치를 금융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의 대기업들이 변화된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에 맞춰 ESG경영을 선포하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RE100이 확산되는 것도 해법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측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해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50년 우리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우리는 그동안의 1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환경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과 이에 따른 새로운 과제를 모색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포럼은 매우 중요하고 뜻깊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듣고, 우리 사회의 지속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신안군수 박우량입니다.

먼저, 지방정부협의회 27개 회원도시를 대표해서 '지속가능발전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재영 회장님, 김종민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에서 먼 길을 와주신 전국지속협 공동대표님들도 환영합니다.

UN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이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그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오늘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기본법에서 정의한대로 지역과 지방 정부의 운영 철학과 정책 전략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남은 7년의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고 한 단체들도 이제 단체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행동을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민·관의 협력, 중앙과 지방의 협업,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소통, 국

제사회를 통한 교류를 공통의 과제로 선정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펼쳐 부족한 시간들을 메꿔나가야 합니다.이런 의미에서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 활동가들의 제안과 토론이 앞으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도 오늘 논의내용을 회원도시들과 공유하고 남은 7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 김홍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김종민 국회의원님, 윤창현 국회의원님, 양정숙 국회의원님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재영 상임회장님,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지속협의 공동회장님이신 광역 지속협의 대표님들과 사무처장님들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님, 두원공과대학교 방효창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점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소중한 제안을 준비해주신 네분의 토론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해,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이 곳 국회에서 연말에 열었을 때, ‘지구촌공동체와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한 위기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많은 생명을 앗아간 재난과 안전사고, 빈곤과 소외, 지방소멸의 문제들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성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아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

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의 연결고리도 만들었으며, 지역정부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유엔 SDG 실행 8년과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맞는 즈음에 열리는 오늘 포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과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 버팀목으로, 디딤돌로 역할하고 계신 모든 분을 응원하며,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1992년 유엔총회 (일명 리우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하고 책임있는 이행을 약속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는 갈 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상에서의 체감 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 한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 정비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귀감이 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1992년 채택 한 '아젠다21'의 글로벌 이행 우수사례로 유엔은 현 지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 을 선정하였던 것은 국가적 성과이

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해 제정 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제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책임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합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와 실질적 추진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의 기초는 이미 입법을 통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국제사회가 합의 한 공적 책무인 '지속가능발전' 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경험을 결집하고 이를 더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가 정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영역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발 제 마 당

발제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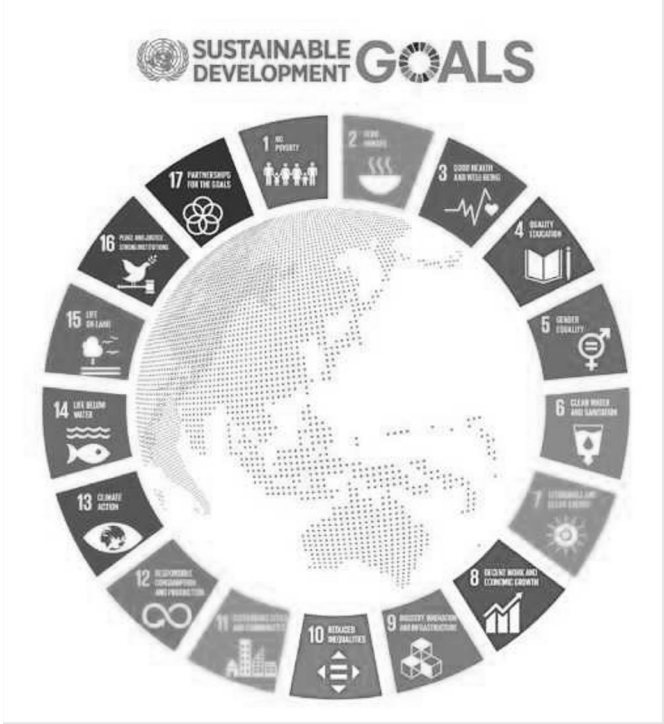

2023.7.26, 국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행을 중심으로-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이해

2

다시 돌아보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유

(2007년 최초 제정시 의의)

- UN 등 국제적 합의 이행 명시 및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 기반 마련
-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 하기 위한 제도 마련
- 하향식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

(2022년 복원, “재”제정의 의의)

- 기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의 역전된 위계 체계 정상화
- 산업계의 역할 명시 : 지속가능경영 추진 (ESG 근거 포함)
- 포용적 사회 등 사회영역의 강화
-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명시
- 추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공론장)을 법률적으로 보장

3

법률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한 사례

2007년 2월, 34개 법률

목적, 원칙, 책무, 사업 등에 적용

2023년 4월, 106개 법률 (1600개 중에서)

79개: 목적,정의,원칙 조항에 사용	27개: 책무,사업,기준 조항에 사용

4

지속가능발전을 목적, 정의, 원칙에 반영한 법률(79개)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립공원공단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극지활동 진흥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물관리기본법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밀산업 육성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발전법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소상공인기본법
- 수산업법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어장관리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에너지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 원양산업발전법
-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원순환기본법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친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5

지속가능발전을 책무, 사업, 조건 등에 반영한 법률(27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관광진흥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미래연구원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양식산업발전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법률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이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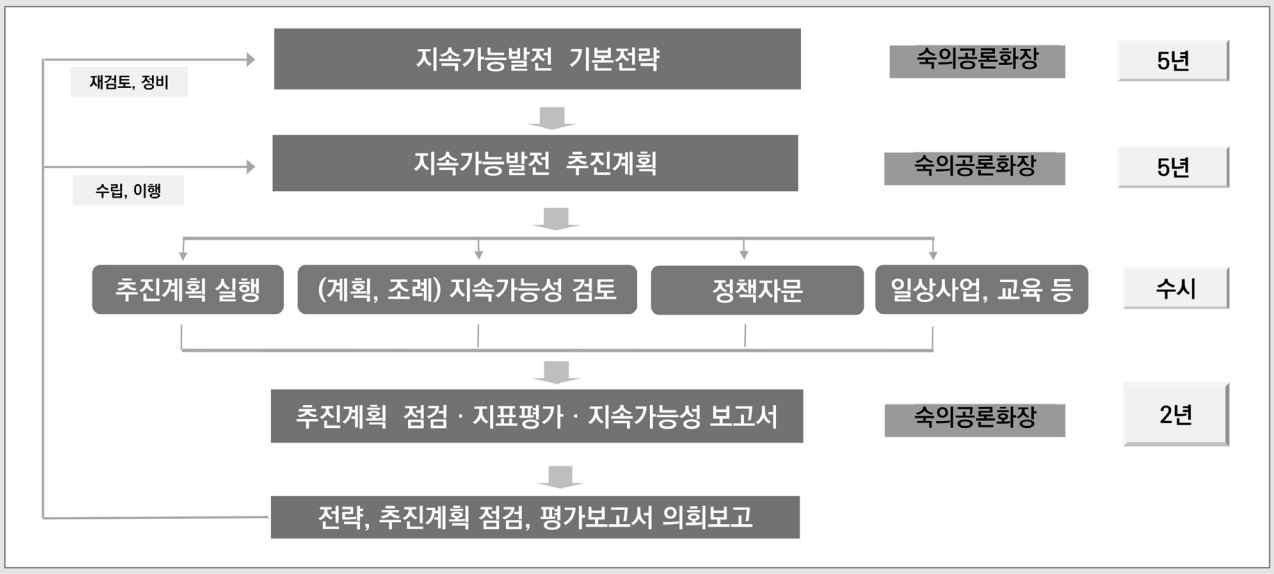

7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행정계획의 관계

8

달라진 주요 제도

주요항목	변경 또는 도입된 내용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점검**	• 명칭변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본전략 이행계획→ 추진계획 • 기간 : 5년마다 수립, 2년마다 추진계획 점검 ➔ 각종 법정 기본계획의 상위적 개념으로 '기본전략' ➔ 내용 : SDGs을 준용하여 17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가능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	• 기존과 동일 (2년마다 평가보고서 발간)
★ **조례, 행정계획수립시 지속가능성검토**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주요 행정계획(중앙정부198개)의 수립이나 변경시 지속가능성 검토 ➔ 중장기 행정계획의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조례)로 정함 ex,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지역종합계획 등 포함 필요 ➔ 대상 조례의 범위 협의필요: 집행부발의 or 의원발의 포함여부

9

달라진 주요 제도

주요항목	변경 또는 도입된 내용
★ **지방정부 추진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지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심의 절차로서 필수 (전략, 추진계획, 법령조례검토, 지표, 보고서 등 심의) ➔ 지속위는 메타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신규)	• 최대 21개 시책의 수립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서 반영하는 방법 가능
★ **숙의공론화장 운영 (신규)**	• 전략, 추진계획, 지표, 보고서 등 추진시 이해관계자의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실질적 의견수렴 ➔ 1회성 또는 단순 행사성 의견수렴 지양
의회 보고	• 전략, 추진계획 점검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의회보고

10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지방정부의 활발한 제도 구축

11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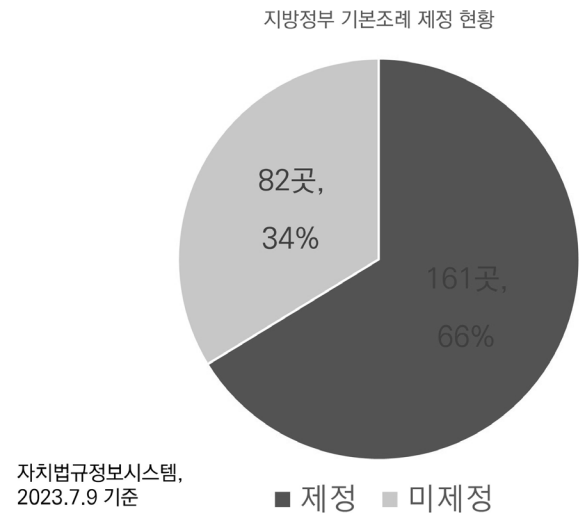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 전국 지자체 243곳 중에서 161곳에서 제정하여 전체 66% 지방정부에서 기본법에 따른 제도를 도입하여 정비함

161곳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후 기본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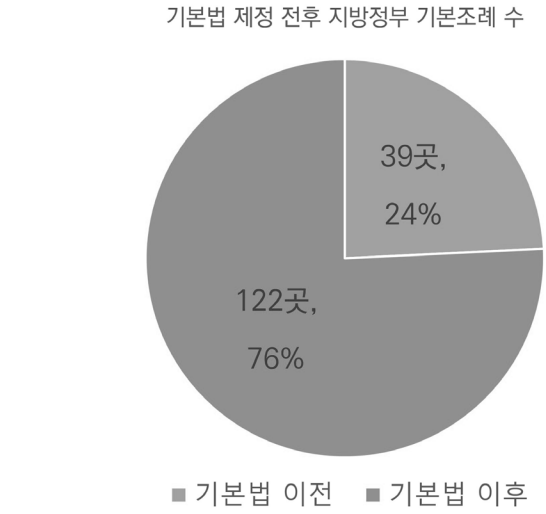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161개 지방정부 중〉

- 기본법 제정(복원) 이전에는 39곳만 기본조례 도입
- 복원 이후 1년동안 122곳에서 기본조례 도입

17개 광역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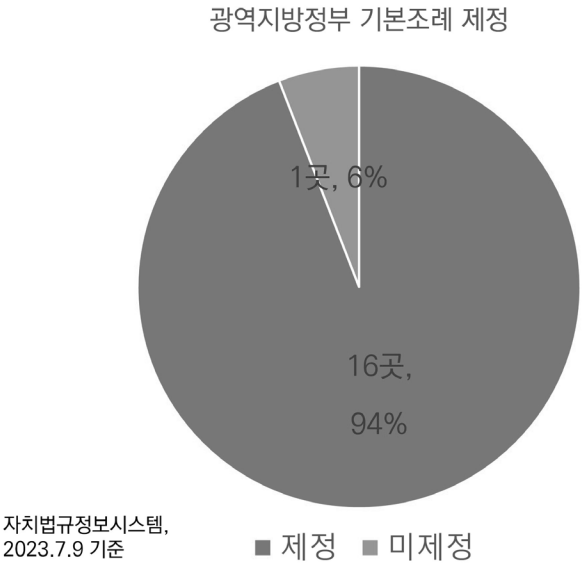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 광역지방정부 중에서는 울산광역시만 미제정

14

226개 기초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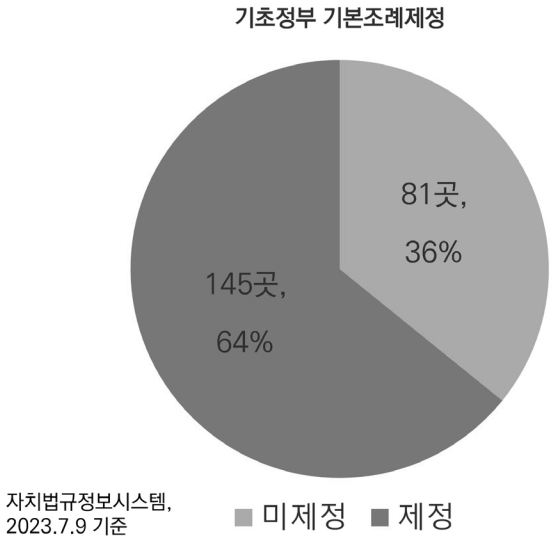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 기초 지방정부 226곳 중 64%인 145개 지방정부가 기본조례 제정

시도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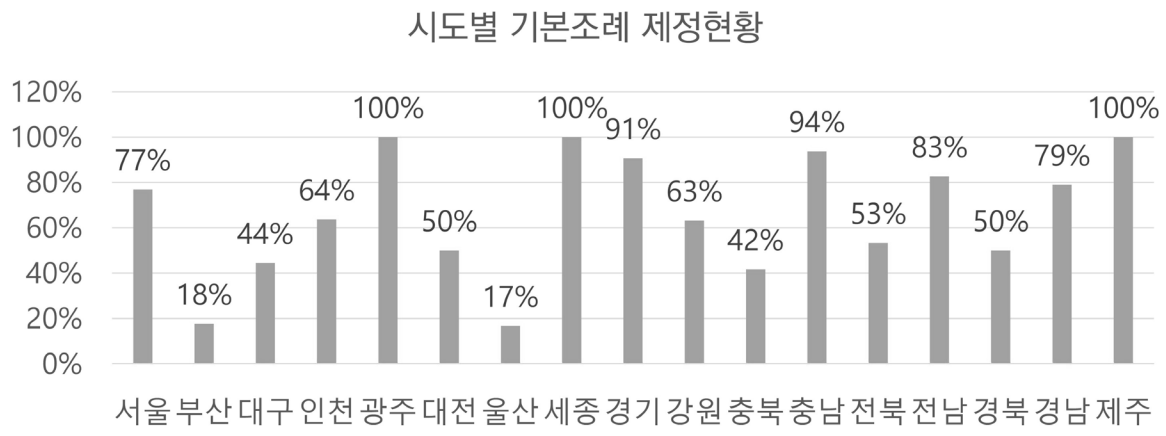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161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소관 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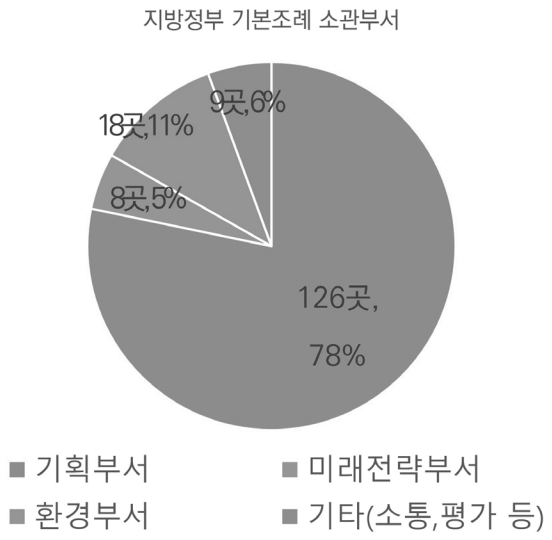

- 소관부서는 161개 지방정부중 기획정책부서가 78%로 압도적으로 많음. 다음으로 환경부서가 11%를 차지함.
- 기존의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 또는 미래전략부서로 이관추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7.9 기준

기본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 장애물

18

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 ① (중앙정부)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정비**
  - 환경부 → 국무조정실로 이관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지속가능발전 준비팀 구성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발간**
  - 2022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발간 (통계청)
  - 2024년도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연구) 예정

19

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 ② (지방정부)

-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 구축**
  - 기본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제도 구축 (39개→161개 지방정부)
  - 위원회 등 추진 시스템 정비
- **지방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 활발**
  -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중장기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정착 및 확산
  -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도입

20

기본법 시행 1년의 한계 ① (중앙정부)

- **국가차원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콘트롤타워(지속위) 부재로 기본법 이행 차질**
  - 주요 정책과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중단
  - 주요 법령의 지속가능성 검토 중단
  - 주요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방지기능 미작동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확산 지원기능 미작동

  ➔ 국가지속위 출범은 보류. 위원회 통합 가능성 대두 (입법사항이어서 불투명)

-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미설치**
  - 실무추진기능(위원회 업무지원 및 국가와 지방의 정책지원 포함) 부재

21

기본법 시행 1년의 한계 ②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한계 (형식적인 제도만 도입)**
  - 기본조례, 위원회의 틀만 만들고, 내용적으로 여전한 개발중심의 정책추진
  - 기본전략, 추진계획도 지역내 사업이 아니라 단순 일회성 연구용역으로 확산 우려

- **지방선거 이후 권력교체에 따른 거버넌스 갈등 표면화**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률적 근거 미약
  - 인류 공동목표와 다양한 정책 추진 주체의 구분 필요

-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주체의 협력과 신뢰 강화 필요**
  - 행정과 지속협의 협력, 단체들간의 협력 강화

22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장애물 ①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광범위성, 추상성과 모호성 존재
- 예타면제 남발 등 여전한 개발담론 우선주의로 지속가능발전 수용성 부족
-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규제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문제
  - 기후위기, 비상상황에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모든 영역의 활동 규제가 필수적이고 엄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음

23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장애물 ②

- 정치와 이념 논리에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에너지전환, 후쿠시마오염수,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공항 등 정부교체와 함께 상당한 기조변화
- 정부내 17개 SDGs 분야별 위원회간 소통과 정책조정 부재
  - 대통령소속 21개, 국무총리소속 61개, 각부처소속 554개 위원회 운용 (22.6 기준)
  - 지속가능발전위, 탄소중립위, 국가물관리위, 지방시대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 분야별 다양한 위원회간 소통과 정책조정 부재

24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장애물 ③

-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대안 부재**

– 현재 지역 농어촌 지역은 현실적으로 자원의 제약이 많아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등 대안모델 발굴과 지원 시급

– 현재 지역소멸의 대응책으로 각종 기업유치와 토건중심 사업의 확장이 주류

– 단기 토건중심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재원배분, 지원정책 부재

25

기본법 시행 1년, 향후 개선방향

26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 우선적으로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충실한 집행이 가장 중요
-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으로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내재화를 위한 기본법 개선 검토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간소화(삭제포함) 또는 SDGs만 설정하도록 함
  -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순 일회성 용역으로 SDGs 수립이 진행되고 있어 내재화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민관이 함께 지역SDGs만 설정해도 충분함. 각종 행정계획은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

27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②

-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 현재는 지방추진계획의 전문적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 지방기본전략은 '조례'에 따라 수립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불일치가 존재
  - 따라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28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선 ①

- 국가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 국가지속위 출범과 추진단의 설치,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등 법적 기능 수행
- 지속가능발전 자체보다는 17개 분야별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전개
  - 17개 분야의 특화된 활동과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함
- 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ESG 추진강화
  -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한 산업계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29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선 ②

-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정책 전환
  - 정부의 지방정부 보조시 기후예산제 등의 정착
  - 탄소중립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 정부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협력과 지원 필요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으로 지역내 확산하도록 정부지원 강화
  - 거점 7개 RCE(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센터) 지원을 통한 교육과 실천 확산

30

감사합니다

사회혁신 연구소
social innovation lab

https://www.si-lab.kr/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발제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前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

방 효 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前 파주지속협 상임회장)

UN-SDGs

1962년 "침묵의 봄" – 레이첼 카슨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유엔인간환경회의와 "인간환경선언", 유엔환경계획 (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기구 발족**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논의

1992년 리우회의(UNCED)와 '리우선언', '의제 21(Agenda21)'
- UN 3대 환경협약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체결되었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창설 합의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 8가지 목표 지정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UNCSD)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 '녹색경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 결의, 슬로건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
-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 ‘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 ‘22년 1월 4일 제정, 시행 ‘22년 7월 5일
  - 경제 · 사회 · 환경 조화, 지속가능발전 실현 목적 –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
- 국가(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가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국가시책 심의, 지표 및 평가(2년 주기), 보고서 작성
  - 지방위원회 : 각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심의, 지표 및 평가(2년 주기), 보고서 작성
  - 국가위원회(‘00년 9월 출범)만 있다가 최근 법률에 의거 지방위원회가 출범되고 있음.
- 국가(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지속협 - 2000년 6월 16일 출범. 지방정부가 설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기구의 전국협의체. 유엔 ECOSOC 특별협의 지위
    - 지자체별 거버넌스(governance)의 확산,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제발굴과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 국가 SDGs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숙의 공론장, 시민참여 구조 유지 등
  - 지방(광역, 기초)지속협 - 실질적인 SDGs 민·관 협력 추진기구. 지역마다 역할이나 위상이 조금씩 다름
    - 지방 SDGs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숙의 공론장, 시민참여 구조 유지 등
- 위원회와 협의회 관계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 협의회는 실천기구로써 위원회에 일부 참여

3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1)

-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 기구 : 회원 정원 100명, 사무국 3명,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3개)
  - 생태·자원순환·환경 및 공릉천 정화 사업 활동
  - 시 위탁 사업(DMZ 생태해설, 에코투어, 에너지 프로슈머 등) 위주로 활동
  - 조례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었음.
- 공릉천 정화 사업을 **<u>인근 도시와 연대 사업</u>**으로 전환
  - 공릉천은 발원지 양주시, 경유지 고양시, 하류~한강 유입전까지 파주시를 관통하는 국가 하천임
  - 인근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전 구간의 생태, 환경, 시설 현황 파악 가능(한강유역청과도 활발한 교류)
- 지역 **<u>시민단체의 협의회 활동 참여</u>**
  - 기존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 경쟁관계 유지
  - 중복/유사 사업을 시민단체에 양보 또는 협의회 회원과 공동 활동, 행사 공동 개최 등
- **<u>파주시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계획</u>**
  - ‘20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용역 수행)
  - ‘21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용역 수행 후 미확정) -> 파주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22년 2월)으로 계획 변경
  - ‘22년 이행체계 및 평가 방법 수립(미실시)

4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2)

- **파주시지속가능발전대학 개최**
- '22년 9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식 개최
- '22년 12월. 기존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 개정
  - **첫 기본 조례부터 개정까지 협의회가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함.**
- '23년 1월 시장 직속 **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 파주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용역 실시 중**(위원회에 협의회 임원 참여)
- 남은 숙제
  - 사무국 조직 확대 및 활동가 역량 강화
    - 현재 사무국장 포함 3명 -> 5명 체제(2명 충원), 승진 규정 문서화
    - 기존 인원은 활동 사업 위주로 하고, 정책 및 기획 기능 확대
  -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재개정
    - 현 조례는 '18년에 개정된 조례로, 신설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역할 및 위상이 중복.
    -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전략 등의 내용을 배제하고, L-SDGs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숙의 공론장 내용으로 수정
    - 신설된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내용 추가
  - 신설된 지속가능발전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및 활동 담보

5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3)

※ 앞서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 협의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합니다!

- 시장
  - 시장과 평소 긴밀한 관계 유지(공적/사적 수시 미팅, 상임회장)
- 담당부서 및 타부서
  - 담당부서의 주업무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그리고 동반활동 등 정책적 우호 관계 유지
  - 타 부서 : 시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능한 업무 지원
    사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성공 : 회원 – 캠페인/서명, 회장 : 유치 논리 개발
- 의회
  - 시 의원들과 지역 현안(생태, 쓰레기 투기, 산지 개발, 먹거리 등) 토론회 다수 개최
  -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시의원 2명 위촉(양당 1명씩)
    - 협의회 회원 출신 시의원 배출 : 파주시의회 15명 중 3~4명 (정당 무관)
- 지역단체
  - 협의회를 지역 이슈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강화.
    - 협의회 사업 중 시민단체가 운영 가능한 사업은 양보 등
    - 지역 단체의 경우 현안을 이슈화 하는데 한계. 회원(인력) 확보 부족 상존
  - 운영위원회에 주요 단체 대표(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민우회 등)를 운영위원으로 위촉

6

또다른 목표, 디지털 협력(1)

- ‘18년 7월.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구성 – 공동회장 : 멜린다 게이츠(게이츠 재단), 마윈(알리바바)
- ‘19년 6월. 디지털 협력에 관한 UN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 발표
  - 보고서 제목 :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 "디지털 협력"은 사회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다.
  - “Digital cooperation” is used in this report to describe ways of working together to address the societal, ethical, legal and economic impacts of digital technologies in order to maximize benefits to society and minimise harms. DigitalCooperation-report-web-FINAL-1.pdf
  - 5가지 권고사항 –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축,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인권 및 인간 자율성 보호, 디지털 신뢰, 안보 및 안전성 촉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증진**
  - 이후 8개 분야의 라운드 테이블 구성하여 세부 논의
- ‘20년 6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발표, UN 사무총장 보고서
  - UN 창설 75주년
  - SDGs 17개 + 1개 추가 예정(코로나로 전체 일정 지연)

7

또다른 목표, 디지털 협력(2) - 디지털 협력 로드맵 내용

- 글로벌 연결성
  - 인터넷 접근 가능 : 전세계 93%, 사용자 53.6%(36억명), 최빈국 10%
- 디지털 공공재
  -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
  - 새로운 질병 감시, 인종 차별적 콘텐츠 및 가짜 정보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측정, 양질의 교육자료 제공 등
- 디지털 포용성
  - 디지털 격차 – 해외 이주민, 난민, 노년층, 청년층, 아동, 장애인, 농촌, 원주민 등
- 디지털 역량 강화
  - 기술 혜택을 현실화 하고 온라인 환경 속 개인의 안정성 및 보안성 그리고 생산성 보장
- 디지털 인권
  - 개인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취약 및 소외 계층에 인권 침해, 불평등 심화, 차별 확대 소지
  - 디지털 신원 (Digital Identity) : 세계 10억명 이상이 법적 신원 정보 부재
- 인공지능
  - AI 기반 자율 살상무기체계, ‘딥페이크 ' 뉴스 정보 등
- 디지털 신뢰도와 안보
  - 식량과 물, 주거, 에너지, 보건 및 교통에 대한 접근성 지원을 하는 기간 인프라의 근간인 디지털 기술 적극 보호 필요
- 디지털 협력
  - 기초 단계부터 민간부문과 정보통신 커뮤니티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포용해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이 가능.

8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1) –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평가 및 지표 모니터링
- 교육·홍보·조사·연구
-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정책의견 제시
- 지표의 작성·보완, 평가 및 보고서 심의·자문

-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정 감사
- 시민 참여, 숙의 공론장 참여
-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지원 등

- 기본전략 실행
- 이행계획 추진
- 정책 집행
- 지표 작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9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2) -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교육청, 센터, 지부, 공공기관

- 특정 목적을 지니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이해관계에 의해 부딪힐 개연성이 많음
- 협약,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교류 활성화

- 지역 시민단체의 현안, 관심사, 이슈 등 정보 공유
- 기존 협의회 사업 양도 또는 공동, 협력 사업으로 전환
- 협의회의 운영위에 참여
- 협의회가 허브 및 스피커 역할

지역 시민단체 — **협의회** — **인접 도시 네트워크**

- 인접 도시와 연결된 강, 하천, 바다, 도로, 산업단지 등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 동일 관심사 또는 이슈 공유

국제 지방 도시 네트워크

- 지역만의 특성, 현안 등을 타국 도시와 공통 사항 공유
- 국제 교류 및 협력
  예) 접경도시 협의체

10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3) – 지역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협의회 역할에서 방향 전환 필요
  - 협의회가 조사, 교육, 인재양성기관의 역할 적극 수행 필요 – 인력 부족
  - 이행체계,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사원 필요 – 조사 인력 교육
  - 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교육 실시, 그리고 강사 양성
- 기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연대와 협력 강화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관련 사업 양보, 위탁, 공동 진행 등 협력 강화
  - 지역의 이슈, 현안 등을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
  - 제 단체들의 개별 행동보다는 연대하는 것이 공론화 효과가 크고, 협의회가 중간에 있으므로 행정에서도 부담이 적음
- 지역에 필요한 단체가 없는 경우
  - 기존 회원(보통 4년 ~ 8년 활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지원, 외부 공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정시간이 지난 후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스핀오프). 이후 공동 사업 진행
  - 파주의 경우 개인활동가를 회원으로 끌어들여 활동하게 하고, 별도의 단체를 만든 경우도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활동 강화
  - 협의회가 L-SDGs 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자칫 탄소중립 활동에 소홀히 할 수도 있음(인력 부족)
  - 행정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체계 마련 시급
  - 정책적 아이디어 선(先) 제공 필요

11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4) – 광역(시·도) 공통 플랫폼 구축

-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센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운영(예정)
  -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중앙 또는 광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소식 공유
- 지속협은 국가, 광역, 기초가 각각 별도의 정보망 구축, 운영
  - 상급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형식과 양식이 맞지 않아 매번 번거롭게 재작업.
  - 홈피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관리가 쉽지 않으며, 홈피 이외에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광역(시·도) 지속협에서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시·군·구) 지속협의 공통 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제안
  - 광역 시·도에서의 자료 요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항구적 데이터 관리 용이. 통계 자료 추출 용이
  - 기초인 시·군·구 지속협은 별도의 홈피 운영이 쉽지 않으며,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됨
    - 일부 재정 여건이 건전한 곳은 홈페이지, SNS 병행 운영(지역별 편차 심함)
  - 시·군·구 지속협에서 소정의 관리 비용을 받으면 운용 재정문제에 융통성이 생김.
  - 최근 다중형 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반 홈페이지가 많이 구축되고 있음

12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5) – 디지털 전환

- 세계 경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테크 기업이 주류
  - 세계 주류 경제의 화두는 디지털, 데이터, AI. 일상에서 온라인, 인터넷, 휴대폰은 필수 생활 요소가 됨.
  - L-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의 지원은 필수. 디지털은 경계의 대상인 아닌 필수 도구
- 모두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 홈페이지의 플랫폼화
  - 홈페이지(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SNS, 유튜브 등 각종 디지털 미디어 적극 활용
  - 온라인을 통한 업무 및 사업 활동 강화로 효율성 증대
  - 각종 데이터 공유, 관리, 처리 등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손쉽게...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디지털 협력 추가
  - 디지털 포용성, 인권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격차,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새로운 의제로 추가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접도시, 국제 지방도시간의 정보 교류도 온라인으로

13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제언(6) – 지역에서의 위상 제고

- 협의회는 민·관 협력 실천 기구
  - 조례상에 존재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며, 실천 사업을 주로 함.
    - 몇몇 활성화된 협의회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대부분 환경운동 단체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협의회 특성상 시의 모든 분야에서 현안 대응 가능하나 현실은 일부 분야에 국한
  - 사무국의 정치색 경계. 실제 회원의 상당수가 다양한 정당에 가입된 경우가 많음.
- 지역 정치인과의 관계(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 지역의 특성상 회장이나, 사무국 직원, 회원들과 인연이 있으므로 여·야 관계없이 지속가능발전에 동의하는 분과 교류 강화
  - 의원의 지역 관심사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관성 발굴 노력
- 행정부서와의 관계
  -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의 현안 파악,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밀접한 교류
  - 대부분 2년내 교체가 되므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업, 이슈 등을 우선 제안
- 지역 언론과의 관계
  - 지역 언론은 지역의 민감한 뉴스를 다루므로 정치인, 공무원, 시민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보도자료나 이슈 등을 통해 상시 정보 공유 필요. 협의회 존재 인식 제고에 꼭 필요

14

마무리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의회 위상 변화 필요
  - 협의회가 지녔던 SDGs 추진 활동이 위원회로 많이 이관됨에 따라 심의, 회의 기능보다는 실천 사업 위주로 사업내용 변화 추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L-SDGs 모니터링, 활동, 교육, 홍보, 숙의공론장 등 역할 증대
  - 탄소중립 활동에 따라 사업 영역 확대
  -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 지역 사회(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체계 강화 – 협의회를 허브(Hub)로
  - 협의회가 지역 제 단체의 허브로써 역할을 해야 함. 직접 활동보다는 정책, 기획,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중점.
  - 지역 단체들과 여러 사업을 분산 진행하고, 공동사업,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관련 단체가 부족할 경우 자체 인력 양성을 통한 단체 결성 유도
  - 협의회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정치인, 언론인,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 강화(회장/국장)
- 지금은 데이터 시대.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진행 필요
  -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각종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인접도시, 국제 지방도시 교류도 온라인으로...

1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 론 마 당

토론 1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0. 발표문에 녹아 있는 문제의식과 지향에 공감, 지속협의 거버넌스 내지 파트너십 제안들 유의 깊게 새김. 가볍게 보태며

□ 거버넌스의 요체
▷ 파트너십 : 거버넌스, 문제는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 성찰 :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남(파트너)에 대한 원려(遠慮)
☞ 파트너 공무원은 왜 소극적일까? 복지부동할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 파트너 시민단체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을 그리 가볍게여길까? 매사에 자기 주장만 내세울까?
▷ 신뢰 : 파트너십의 전제이자 결과 축적

□ 자못 진지한, 그리고 거버넌스 현장 관계자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물음
- 거버넌스가 민주적인가? 거버넌스 하지 않으면 비민주적인가? 나아가 반(反)민주적인가?
- 거버넌스가 정의인가? 거버넌스 하지 않으면 불의(不義)한가?
- 나는 과연 파트너에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 정녕 줄 게 없다면 파트너십 (거버넌스) 재고함은 ….

□ 왜 거버넌스인가? - 주체의 입장에서
√ 성과를 내는 길
√ 포텐셜을 높이는 길
√ 주체적으로 의미 있게 사는 길
√ 개인 & 조직의 지속적 성장
√√√

□ 어떻게 거버넌스인가?

: 거버넌스형 리더로서 자의식이 거버넌스를 성취한다

□ 거버넌스 명제들 작성하기
-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다
-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진화이다
-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 거버넌스는 과정이다
- 거버넌스는 사람이다
- 거버넌스는 ・・・

□ 로컬거버넌스의 층위와 차원들
① 민과 관 사이의 거버넌스
② 관과 관 사이의 거버넌스
③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의 거버넌스
④ 정부 간 거버넌스
⑤ 로컬거버넌스촉진 . 지원 조직
⑥ 지역의 거버넌스 총괄기구
⑦ 거버넌스 점검체계 등등

□ 파트너십을 위한 몇 가지 단상
- 다른 그룹, 특히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견해가 다른 그룹과 꼭 함께 한다(하기 위해 진정 노력한다)
  : 한국의 사회 정치 현실에서 거버넌스가 오래가기 위한 즉, 거버넌스의 온전한 축적을 위한 거의 절대 조건
- 민간이라면 공공부문(공무원)을, 공공부문이라면 민간부문(시민사회, 경제사회)을 찾아 반드시 함께하고, 파트너 그룹의 역할과 위상을 더 앞세운다.
-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성취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양보할지 먼저 생각한다. (행여 바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민간 측이라면, 내(우리) 파트너 공무원이 성과를 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측이라면, 내(우리) 파트너 민간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는 마음을 진심으로 낼 수 있기를..

토론 2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강동렬 SDSN Korea 간사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SDSN Korea
강 동 렬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SDSN Korea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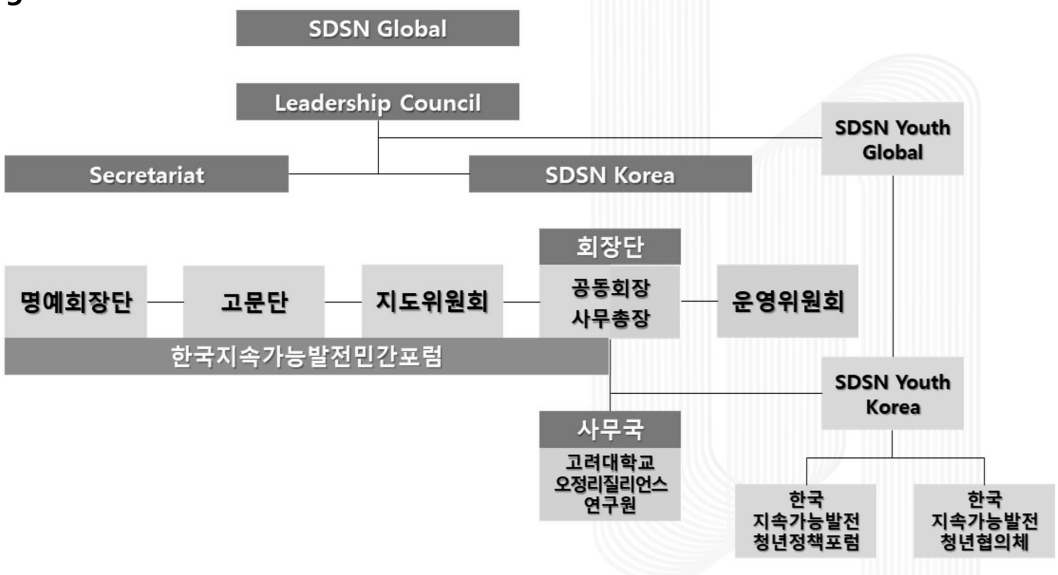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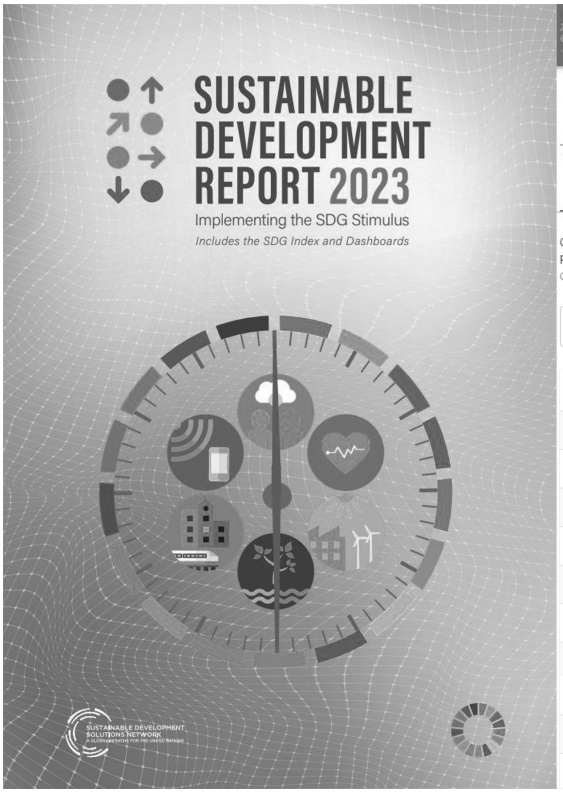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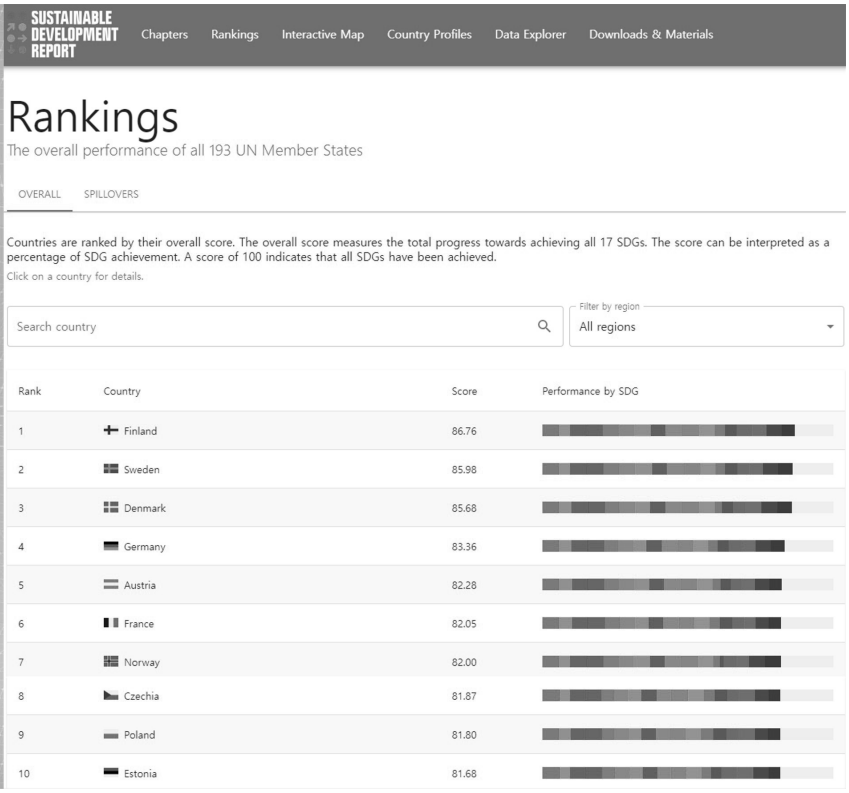

SDSN Korea in Numbers

범례: 2022년/누적

SDGs 아카데미 수강생 509/890 명 교육	세대 간 SDGs 네트워킹 329/981 명 참여
SDGs 청년 리더 역량강화 훈련 63/211 명 수료	SDGs 청년 혁신가 593/75 명 육성
SDGs 카드뉴스 19/130 편 발행	지역사회 SDGs 솔루션 43/68 건 발굴

Ecosystem

| 회원 청년 연합회

| 회원 청년 단체

05

| 분포 대학

06

목차

1) SDGs 달성 국제 현황

2) SDGs 달성 국내 현황 및 제언

1) SDGs 달성 국제 현황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SDSN Korea

10

Figure 2.1
World SDG Dashboard at the midpoint of the 2030 Agenda

Source: Authors'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11

Figure 2.2
Status on individual SDG targets at the midpoint of the 2030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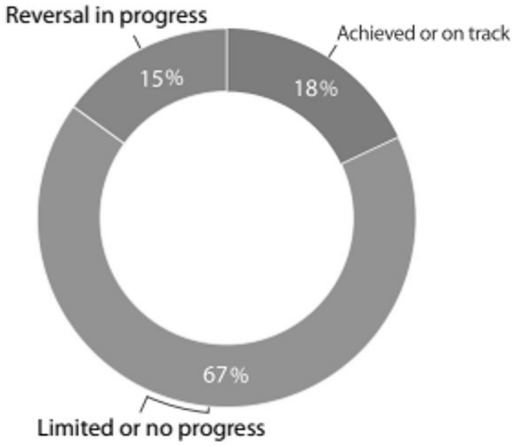

Source: Authors'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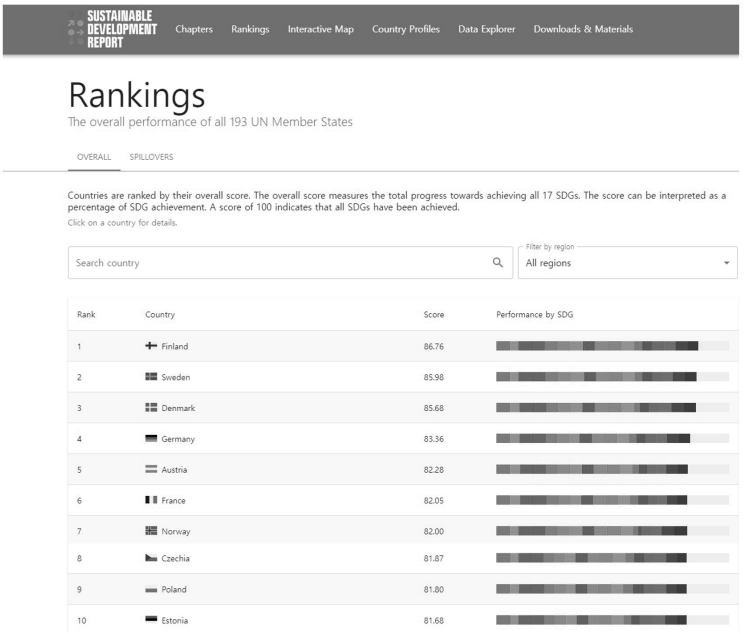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2

-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어떠한 SDGs 목표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며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
- 전 세계의 SDGs 이행 성과는 3년 연속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고소득국(HIC)과 저소득국(LIC) 간 **SDGs 성과 격차는 2015년(SDGs 채택 년도)보다 2030년(SDGs 만료 년도)에 더 커질 것**

Figure 1.1
SDG Index world average: pre-pandemic trend and trend needed to achieve the SDGs by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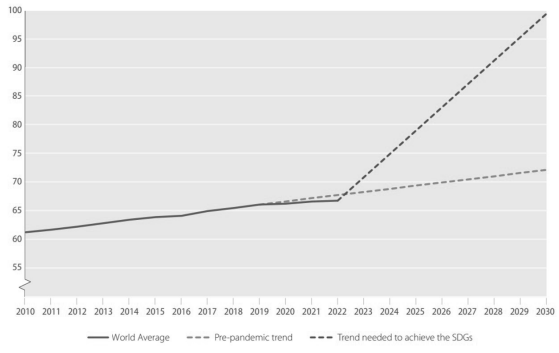

Note: Pre-pandemic trend corresponds to the extrapolated annual growth rate over the period 2015–2019. See Part 2 for further details.

Figure 1.2
Observed and projected gaps in SDG Index score between HICs and LICs (in percentage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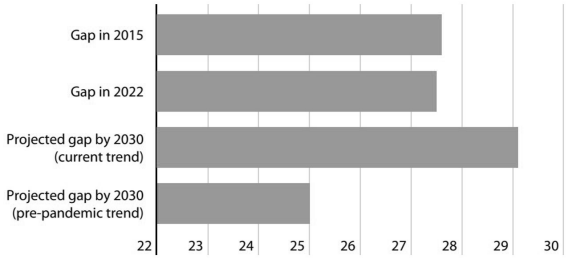

Note: Projected gap by 2030 is based on extrapolation of annual growth rate on the SDG Index over the period 2019–2021. Pre-pandemic projected gap is based on an extrapolation of SDG Index annual growth rates over the period 2015–2019.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3

Table 1.1
Global Population, Investment, and GDP by World Bank Income Category (% of World Total)

	Population	Investment	GDP
LIC	8.0%	0.4%	0.5%
LMIC	43.2%	11.9%	10.7%
UMIC	32.7%	37.4%	28.5%
HIC	16.1%	50.3%	60.3%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Table 1.2
Credit Ratings by Income Category

	Number of UN Member States	Countries with a Moody's rating	Countries with an investment-grade rating	Countries with an investment-grade rating, %	Population with an investment-grade rating, %
LIC	28	9	0	0.0%	0.0%
LMIC	54	36	3	5.6%	52.8%
UMIC	52	40	10	19.2%	70.2%
HIC	59	52	45	76.3%	98.3%
WORLD	193	137	58	30.1%	60.5%

Source: Moody's and World Bank (2023)

- 2022년 기준 고소득국(HIC)의 1인당 투자는 평균 $11,535 USD인데 반해 저소득국(LIC)의 1인당 투자는 평균 $175 USD에 불과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4

Figure 3.2
Submission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number of submitters, 2023) and submissions per year sinc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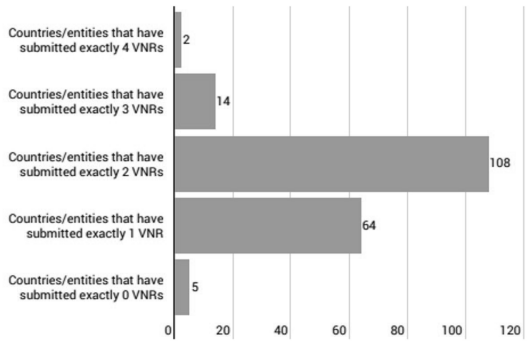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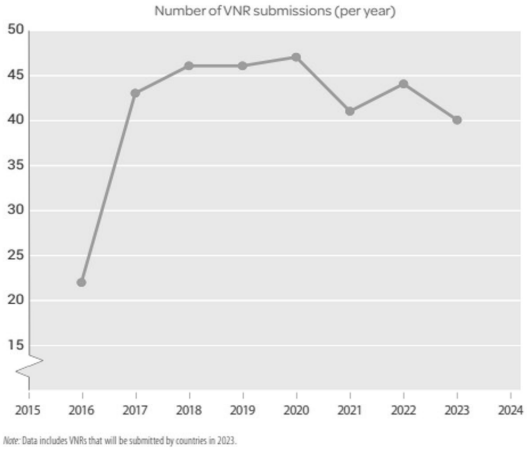

Note: Data includes VNRs that will be submitted by countries in 2023.

- 193개 UN 회원국 중 **188개국**이 VNR을 **한 차례 이상** 제출
- **두 차례** 제출한 국가는 **108개국**, **세 차례** 제출한 국가는 **14개국**, **네 차례** 제출한 국가는 **2개국**
- 반면에 **대한민국은 2016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VNR을 제출
- 이웃국가인 **일본**(2017년, 2021년)과 **중국**(2016년, 2021년)은 각각 **두 차례** 씩, 심지어 **북한도 2021년 첫 VNR 제출**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2) SDGs 달성 국내 현황 및 제언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SDSN Korea

16

- 대한민국은 2022년 77.9점(27위)에서 **2023년 78.1점(31위)으로 점수는 0.2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
- 점수와 순위 산정에는 122개 지표의 정량적 성과 반영
- 국가 수반의 SDGs 이행 성명 유무,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유무, 국가 SDGs 수립과 모니터링 여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성 여부와 주관부처의 위상,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R) 제출 횟수가 정책적 성과 반영
-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나타내는 정책적 성과 점수는 55점에 불과**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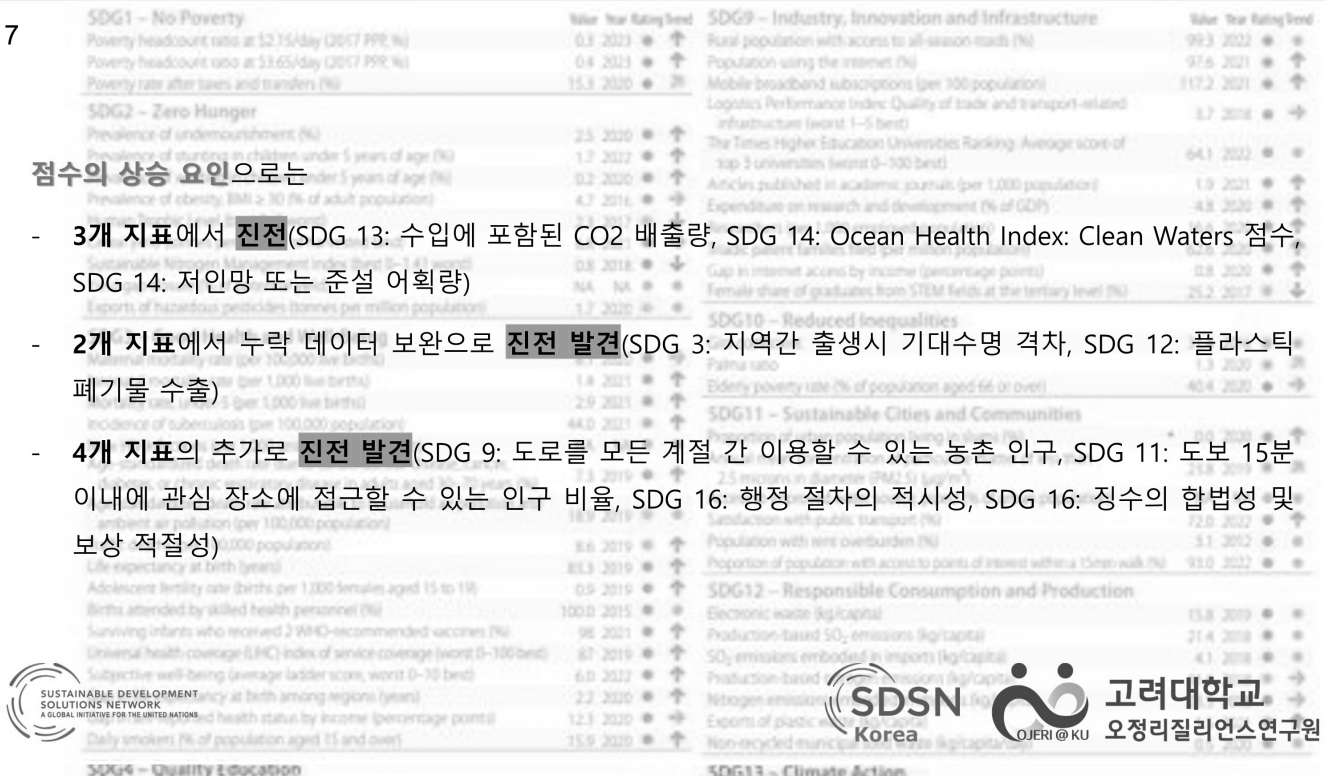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는

- **3개 지표**에서 **진전**(SDG 13: 수입에 포함된 CO2 배출량, SDG 14: Ocean Health Index: Clean Waters 점수, SDG 14: 저인망 또는 준설 어획량)
- **2개 지표**에서 누락 데이터 보완으로 **진전 발견**(SDG 3: 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12: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 **4개 지표**의 추가로 **진전 발견**(SDG 9: 도로를 모든 계절 간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인구, SDG 11: 도보 15분 이내에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행정 절차의 적시성, SDG 16: 징수의 합법성 및 보상 적절성)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8

순위의 하락 요인으로는

- **16개 지표**에서 **후퇴**

(SDG 2: 비만 유병률, SDG 2: 곡물 수확량, SDG 2: Sustainable Nitrogen Management Index, SDG 3: 산모 사망률, SDG 3: 건강상태 자가검진의 소득에 따른 격차, SDG 4: 중등 이하 교육 이수율, SDG 6: 최소한의 기본 위생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 SDG 7: 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8: 조정 GDP 성장률, SDG 8: 수입품에 포함된 산업재해, SDG 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무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의 품질, SDG 12: 생산 기준 질소 배출량, SDG 12: 수입에 포함된 질소 배출량, SDG 15: 영구 삼림 벌채, SDG 16: 미결 수형자, SDG 16: Press Freedom Index)

- **1개 지표**에서 누락 데이터 보완으로 **후퇴 발견**(SDG 17: Financial Secrecy Index)
- **2개 지표**의 **데이터 누락**(SDG 3: HIV 신규 감염, SDG 12: 재활용되지 않는 도시 고형 폐기물)
- **1개 지표**의 추가로 **정체 발견**(SDG 8: 수입품에 포함된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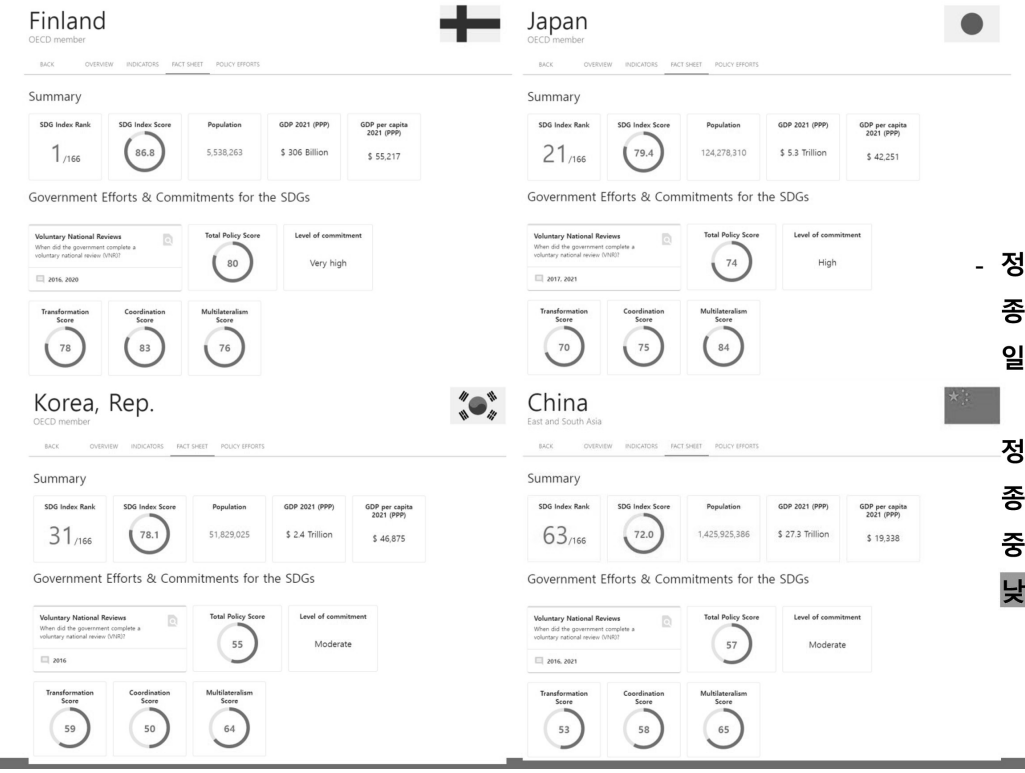

- **정량적 성과는 종합 순위가 10계단 높은 일본과 비슷하나**

정책적 성과는 종합 순위가 32계단 낮은 중국보다도 모든 영역에서 낮음

20

정책적 성과의 **긍정적 요인**은

- 120대 국정과제 중 99항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 한국환경연구원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SDGs이행보고서 발간

부정적 요인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부처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격상되었으나 **아직 위원회가 출범되지 못한 점**
- 2016년 이래 **후속 VNR이 제출되지 않은 점**
- **국가예산의 별도 항목으로 SDGs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본] [전]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 ☐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본] [전]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본]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 학계 · 산업계 · 교육계 ·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 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 ·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 · 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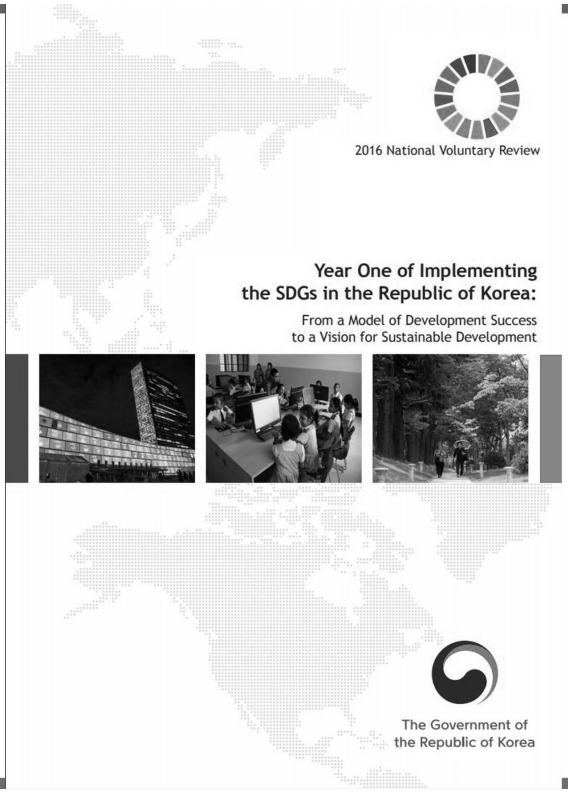

- 지역자치단체들도 **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s, VLR)**를 작성하여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에 제출
- **전세계 78건**의 **VLR** 중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2월 당진시, 2021년 6월 수원시, 2022년 1월 서대문구까지 **총 3건**이 제출
- SDSN Korea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2차 및 3차 VNR 제출을 기원하며 2021년부터 전국 42개 대학 80개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청년 검토 보고서(Voluntary Youth Reviews, VYR)**를 발간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Voluntary Youth Reviews

HLPF는 UN 회원국에게 4년마다 SDGs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93개 UN 회원국 중 187개국이 VNR을 한 차례 이상 제출하였으며 그 중 두 차례 제출한 국가는 72개국, 세 차례 제출한 국가는 13개국, 네 차례 제출한 국가는 2개국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2016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VNR을 제출하였으며 이웃국가인 일본(2017년, 2021년)과 중국(2016년, 2021년)은 각각 두 차례씩, 심지어 북한도 2021년 첫 VNR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들도 자발적 지역 평가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s, VLR)를 작성하여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에 제출하고 있는데, 전세계 78건의 YLR 중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2월 당진시, 2021년 6월 수원시, 2022년 1월 서대문구까지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SDSN Korea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2차 및 3차 VNR 제출을 기원하며 2021년부터 자발적 청년 평가 보고서(Voluntary Youth Reviews, VY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2 VYR에는 SDSN Youth Korea 산하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SDG Youth Committee Secretariat Korea, SYCS Korea)의 전국 42개 대학 80개 회원 단체 중 21개 대학 3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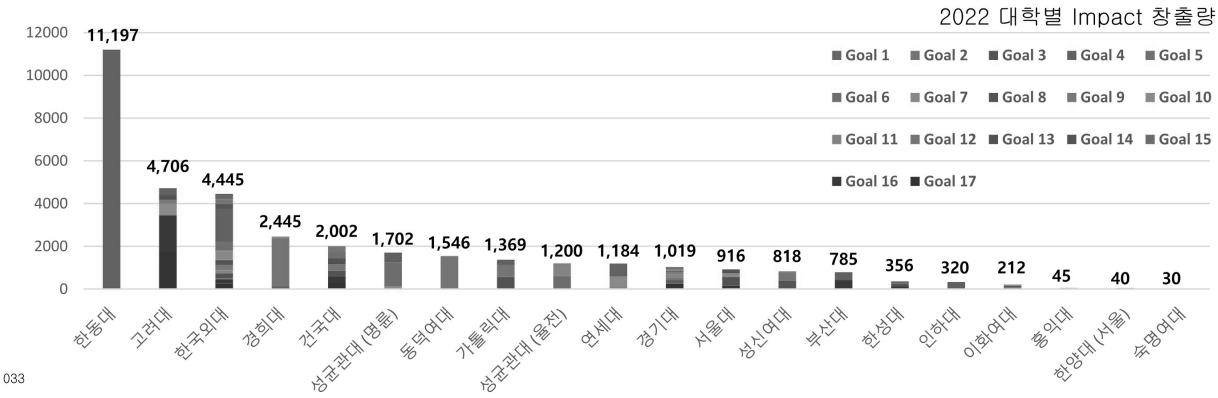

033

Impact Score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뒤 기여 SDG 수로 나누어 각 SDG에 반영했습니다.

1) 수동형 프로젝트(캠페인 등): 체험자 1인 당 1점
2) 능동형 프로그램(봉사, 교육, 포럼 등): 참여자 1인*1시간 당 1점
3) 카드뉴스 및 블로그 콘텐츠 형: 누적 조회수 1회 당 1점
4) 동영상 콘텐츠 형: 누적 조회수 1회 *1시간 당 1점

SDG Dashboard의 색깔 별 구간은 아래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총 창출 임팩트를 전체 단체 수로 나눈 값(A) 이상 = Challenges solved
A 미만에서 A를 5가지 영역(Pillars)으로 나눈 값(B) 이상 = Challenges remain
B 미만에서 A를 17가지 목표(Goals)로 나눈 값(C) 이상 = Significant challenges
C 미만에서 0 초과 = Major challenges

SDG Performance Web은 백분위가 아닌 실제 값이며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022 SDG별 창출 Impact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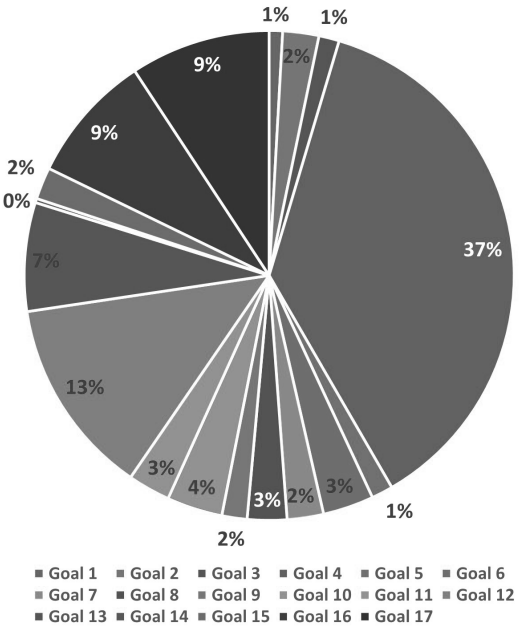

034

AIESEC in Korea 국제리더십학생단체

SDGs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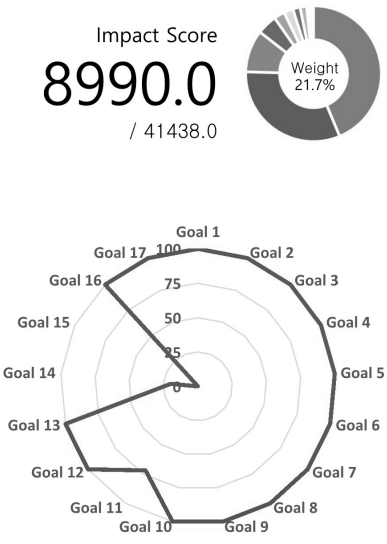

039

AIESEC in Korea 국제리더십학생단체

지부별 창출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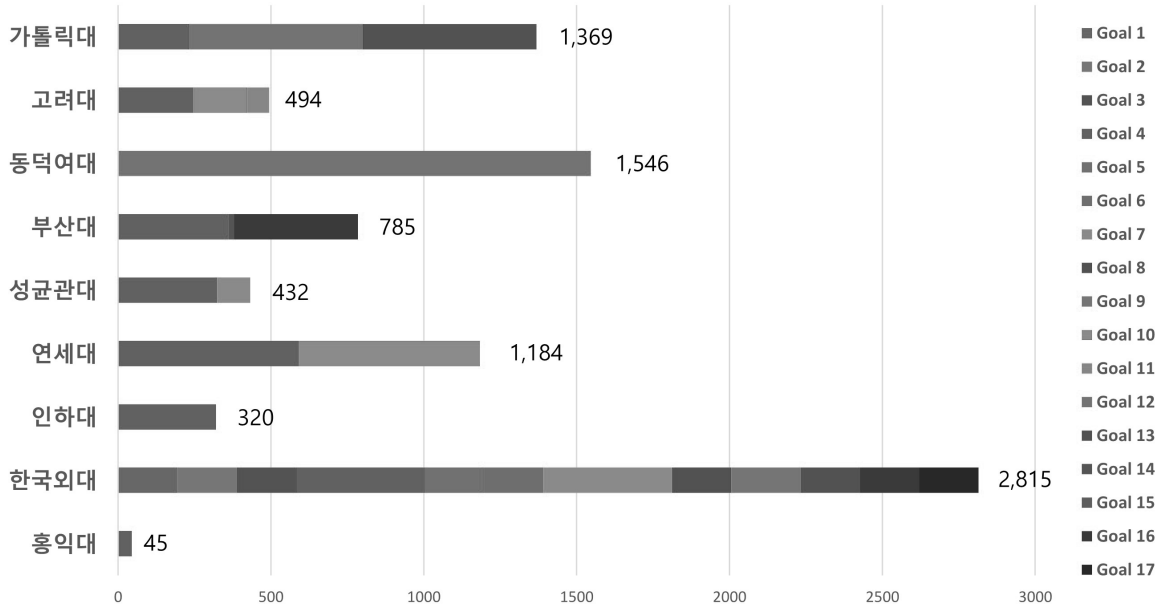

*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지부는 자료 미제출로 누락

AIESEC

한국 중앙위원회

AIESEC은 '평화와 인간 잠재력의 실현'을 비전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생 자치 단체입니다. 총 109개의 국가에서, 5,000곳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매년 30,000개 이상의 해외 봉사/인턴십 프로그램을 오픈하며 전 세계의 청년들이 문화 간 교류를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IESEC in Korea는 이러한 AIESEC의 한국 지부이며, 현재 총 14개의 대학교 지부에서 400명 이상의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재 관리, 재무 관리, 해외 봉사/인턴십 중개 부서, 국내 봉사 프로그램 담당 부서, B2B 및 B2C, 단체 발전 관리 등의 세부적인 부서로 나뉘어져 체계적으로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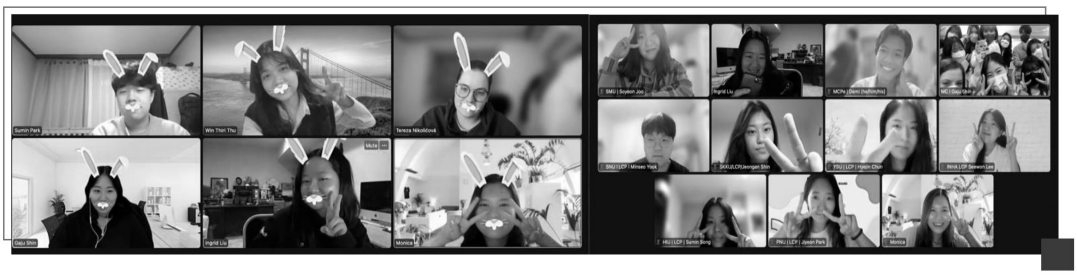

AIESEC 동덕여자대학교 지부

KOA 오픈부스

관련 SDGs 12

장 소	동덕여자대학교
일 시	2022. 11. 14. ~ 11. 16.
규 모	110명
내 용	공정무역 소개를 들으면 공정무역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오픈 부스를 개최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느낀 점, 자신의 소원 등을 적어 소원나무를 꾸미는 행사와, 매일 약 10명에게 선착순으로 공정무역 초콜릿을 덤으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KOA IR Conference

관련 SDGs 12

방 식	온라인
일 시	2022. 12. 16.
규 모	외국인 학생 3명
내 용	AIESEC in HI, Japan 지부와 공정무역 컨퍼런스를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한 간단한 게임 진행 후, 공정무역의 정의, 역사, 의의 등 관련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에게 공정무역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공유했습니다.

029

2022 진행 프로젝트

2022 SDG Youth Living Lab

2022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청년 생활실험실

Energetic Danglin 당찬 당진 |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 SDSN Korea | SDSN YOUTH | KBCSD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22 대상

작당모의
당신의 목적지는 무슨 색인가요?

작당모의는 당진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중교통접근성에 주목하였고,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당진 시내버스 시간표 개선을 위해 '기존 시간표의 시각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색각 이상자, 고령자, 문맹자, 장애인, 외국인, 당진 방문자 등 모든 계층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채도를 가진 색상과 큰 글씨 시간표,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당진 시민들의 교통 정보 접근성 향상과 SDGs 교육자료와 시간표를 함께 부착하여 당진시의 대중교통접근성 강화와 함께,당진 시민의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인식증진과 '지속가능한 당진'의 브랜딩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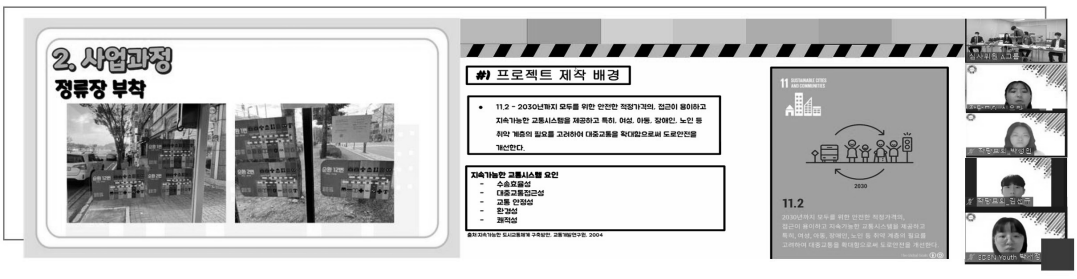

32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ESCAP

ECE

ECA

ECLAC

ESCWA

G20 GROUP OF TWENTY

3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 · 운영과 조사 · 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 ·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 · 투명성 · 포용성 · 대표성 · 책임성 ·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I

3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공] [국]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 ☐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공] [국]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공]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 학계 · 산업계 ·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 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 ·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 · 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1 추진 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와 청년 위촉 비율**은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 法§15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令§20①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2 추진 현황

○ **(목표) '25년까지** 정부위원회 중 **청년참여위원회를 30% 이상 지정,** 지정위원회에 **청년을 20% 이상 위촉**(「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 12월)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청년위촉 위원회 목표 비율	중앙부처	13.9% (135개)	17.1% (147개)	20.3% (174개)	23.6%	26.8%	30% 이상
	광역지자체	0.6% (17개)	6.5% (207개)	12.4% (394개)	18.2%	24.1%	30% 이상

* 전체 위원회 수(중앙: 857개, 지자체: 3,515개)를 기준으로 목표 산출

○ **(현황) '21년 12월말** 기준 **134개**(15.6%) **위원회를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로 지정, 이 중 **78개 위원회에서 122명의 청년위원 위촉**

- **지자체 지정 청년참여 위원회는 313개**(8.9%), 이 중 **232개 위원회가 777명의 청년위원 위촉**

3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원칙

○ **(지정 대상)**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청년 관련성 여부***, **既지정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지정

* ①개별 사건이나 행정처분을 다루는 위원회 ②청년 이외의 세대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③외교·안보·국방 또는 행정 내부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는 제외

※ 위촉직 정원이 10인 미만인 위원회는 부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 지정

○ **(위촉 비율)** 신규 지정위원회의 초기 위촉 부담을 고려, 법령상 최저 기준인 **'10% 이상'**으로 일괄 적용(추후 상향기준 마련)

○ **(기본계획 상 목표 충족)** '22년 **목표 비율 20.3%**, 본 지정 반영 시 약 **22.2% 달성***

* 총 857개 정부위원회 중 **190개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 56개** (붙임)

4 향후 계획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기본법」상 지정 대상 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한정되어 지정 한계로 작용

- 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이 청년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되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추진

○ **(청년위원 위촉요건 완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위촉위원 자격 요건 등으로 청년위원 발굴 및 위촉에 어려움 호소(위원회 운영 부서)

- **청년**의 경우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정원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청년 인재 발굴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청년 인재 DB 조기 구축**

5 행정 사항

○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변경 사항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22. 2.월)

○ 위원회 별 **청년 위촉 현황 점검** 및 **위촉 비율 상향 조정**('22년 하반기)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22년 하반기)

○ **청년 인재 DB 구축**('22년 하반기)

38

관 판례 연 연혁 별 위임행정규칙 규 규제 생 생활법령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15조

관 □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관 □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제1장 총칙

[전] [후]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 마련

[전] [후]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제1장 총칙

[전] [후]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 사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전] [후]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 · 복지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전] [후]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 물건 · 장소 ·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설명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2.1.4(화)
담 당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과장 류승목, 사무관 배유진 (044-200-6323, 6326)

청년 연령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2022.1.4., 서울경제 보도 관련 -

1. 주요 보도내용

□ **법률·정책·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혼선 가중**

- 청년기본법 만 19~34세 규정했지만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29세
- 행복주택은 39세 이하 신청가능, 경북 봉화·예천선 49세까지 규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통상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합니다.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연령 범주화**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일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보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 1 -

SDSN Korea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OJERI @ KU

4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 · 운영과 조사 · 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 ·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 · 투명성 · 포용성 · 대표성 · 책임성 ·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SDSN Korea

OJERI @ KU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고맙습니다!

sdsn_korea@korea.ac.kr
010-9913-3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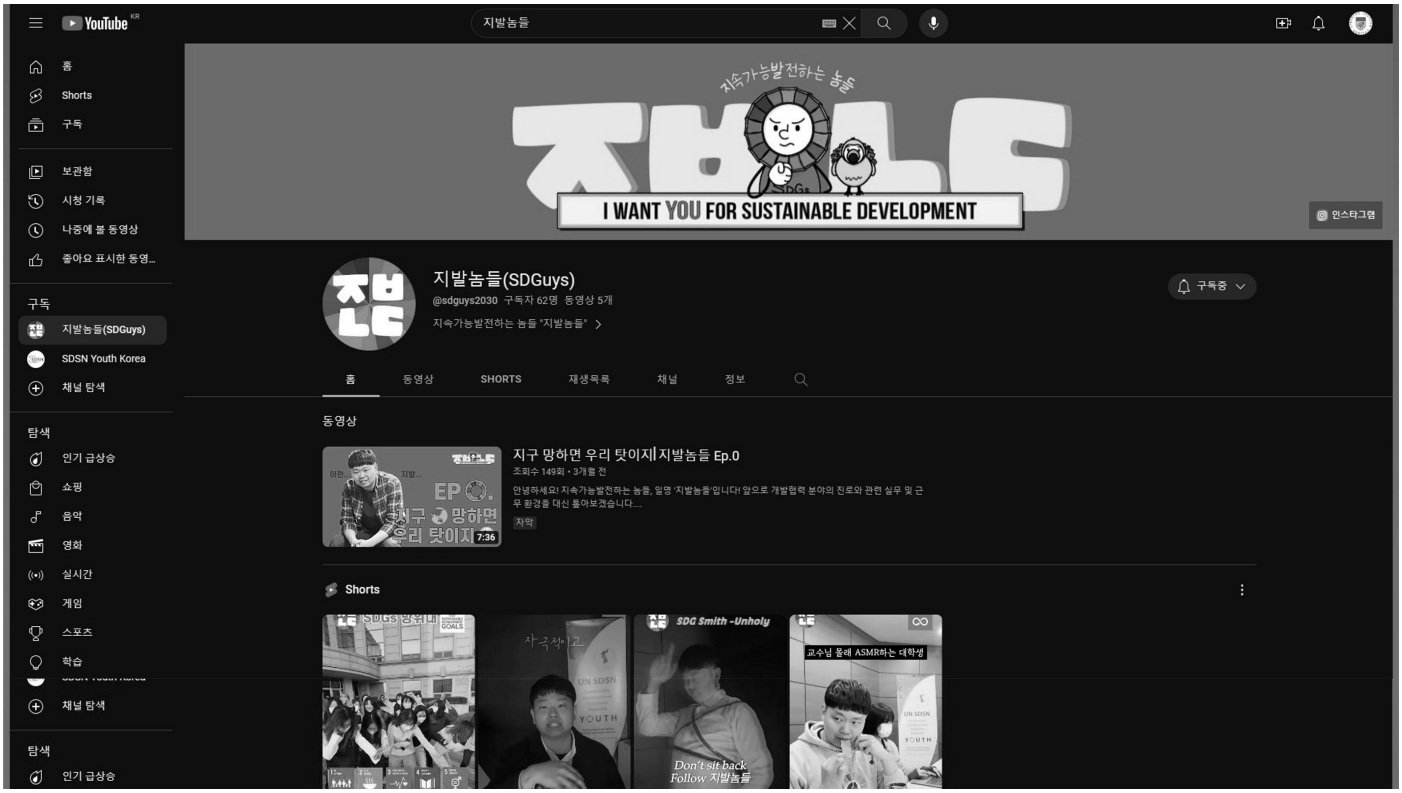
YouTube KR
지발놈들
지속가능발전하는 놈들
I WANT YOU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인스타그램
홈
Shorts
구독
보관함
시청 기록
나중에 볼 동영상
좋아요 표시한 동영...
구독
지발놈들(SDGuys)
SDSN Youth Korea
채널 탐색
탐색
인기 급상승
쇼핑
음악
영화
실시간
게임
스포츠
학습
채널 탐색
탐색
인기 급상승
지발놈들(SDGuys)
@sdguys2030 구독자 62명 동영상 5개
지속가능발전하는 놈들 "지발놈들" >
구독중
홈
동영상
SHORTS
재생목록
채널
정보
동영상
지구 망하면 우리 탓이지|지발놈들 Ep.0
조회수 149회 • 3개월 전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하는 놈들, 일명 '지발놈들'입니다!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의 진로와 관련 실무 및 근무 환경을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자막
EP.0
지구 망하면 우리 탓이지
7:36
Shorts
SDG Smith -Unholy
Don't sit back Follow 지발놈들
교수님 몰래 ASMR하는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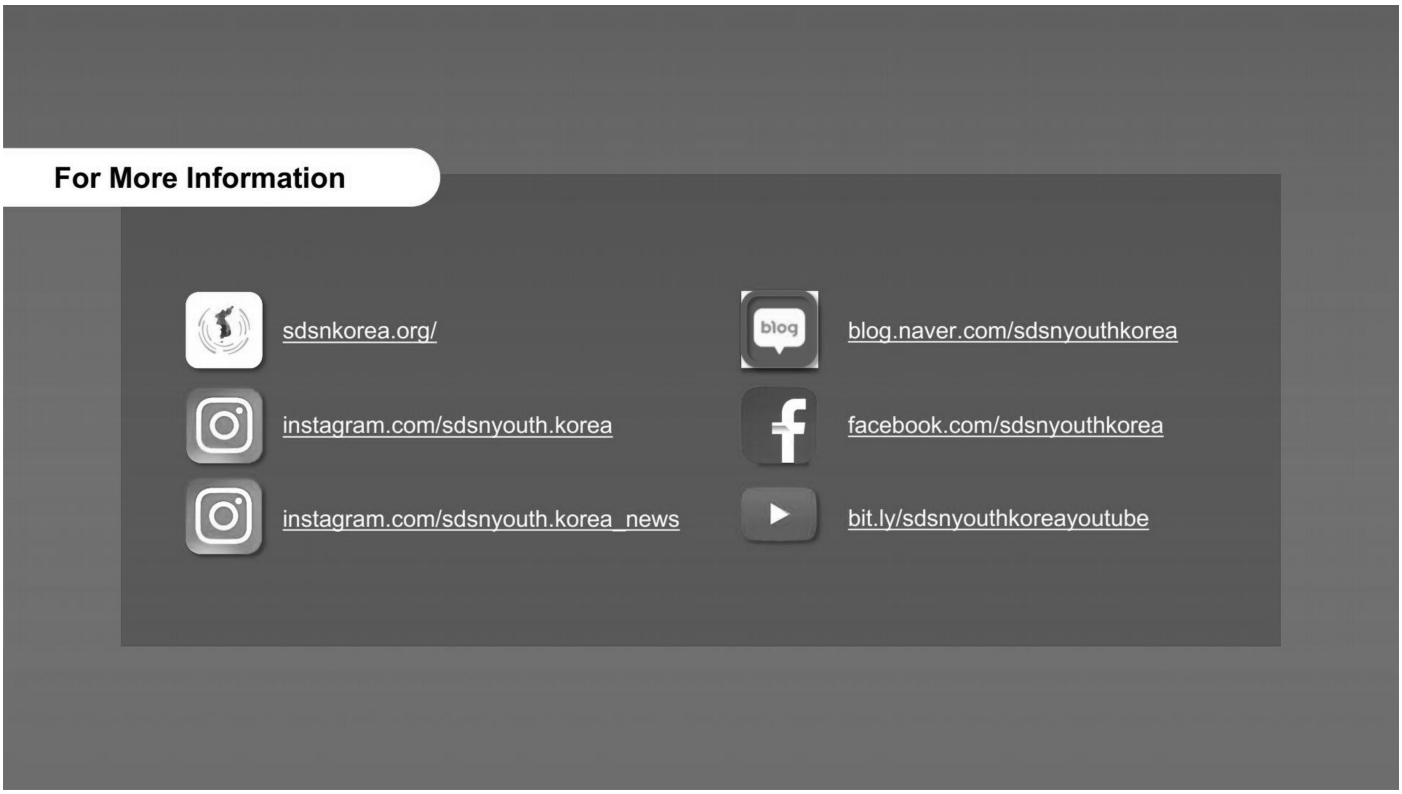
For More Information
sdsnkorea.org/
blog.naver.com/sdsnyouthkorea
instagram.com/sdsnyouth.korea
facebook.com/sdsnyouthkorea
instagram.com/sdsnyouth.korea_news
bit.ly/sdsnyouthkoreayoutube

토론 3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운영위원

SDGs 이행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

윤경효 | dyoon1130@gmail.com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운영위원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국제 SDGs 이행 동향 및 주요 이슈

❍ 2023년 9월 18일~19일 제2차 SDGs 정상회의 개최: SDGs 이행 중간평가, 향후 7년간 SDGs 중점 이행 과제 도출, '사람'의 필요 충족을 최우선

❍ 2016~2022 7년 동안 197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 회원국이 최소 1회 이상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제출(95%).** 2021년 기준, 60개 응답국가 중 84%가 SDGs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등 SDGs가 국제규범으로서 인정받는 추세.

❍ **지방정부 보고서(VLR): 2023년 7월 기준 총 142개**. 한국은 총 3개 지방정부가 유엔에 지방정부 보고서 제출(서대문구(2021), 수원시(2018, 2021), 당진시(2020))

❍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ort): 2023년 7월 기준 총 175개.** 한국은 총 5개 시민사회보고서가 게시(한국시민사회보고서 2017, 2019, 2020, 2021, 2022)

❍ **기업 및 산업계**의 경우, **ESG 등 지속가능경영전략 도입** 추세

❍ **<2023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심지어 2050년까지 SDGs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 절대빈곤 감소 등 일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영양부족, 거버넌스 관련 목표는 거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 대기오염 및 환경보건, 농업용수 이용, 음식물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보호 등 주로 **환경 분야가 후퇴**할 것으로 전망

❍ **제2차 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의제**

- 국가차원의 이행 강화(SDGs 통합, 지방차원의 실천 촉진)
- 보다 통합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제도 강화(책임성, 투명성)
- 과학적 데이터 및 근거에 입각하여 SDGs 이행 평가 및 이행
- 이행수단 해결: 개발재원 조성(국제금융제도 개혁 요구), 기후금융 및 역량강화, 과학기술혁신,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통계데이터 투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파트너십

❍ **제2차 SDGs정상회의 대응 글로벌 시민사회의 요구사항**

- 구체적인 약속과 재원 조달 대책을 담은 SDGs 6년 이행계획 수립
- GDP 대체 지표 개발

- 국가 및 국제환경법의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글로벌 생태통합 프레임워크 개발과 유엔환경총회 결의사항(예: 2024 플라스틱 규제협약 채택)의 완전한 이행, 글로벌 팬데믹에 대비하여 '하나의 건강(One Health)' 접근원칙 추진
- '포스트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 국내 SDGs 이행 동향 및 주요 이슈

❍ **2021년 1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경제, 사회, 환경 정책 통합조정 국가 행정체계 구축. 다만, **중앙정부의 행정추진체계 미구축**으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기능이 미작동**.

❍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경우 빠르게 조례 제정 및 행정이행체계 개편 추진(161개, 66%). 다만,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기획부서의 인식 부족 등), **중앙정부의 SDGs 이행 지원체계(정책, 인사, 재정 등) 미비, 정치적인 왜곡 또는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 자발적, 적극적 실천 기대 곤란**.

❍ 삼성, SK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경영이 천명되면서 **국내 기업 및 산업계에 ESG투자 및 경영컨설팅(ESG평가, 보고서 등)이 빠르게 확산.** ESG가 **사업리스크 관리(인허가, 무역, 재무회계)나 사회공헌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어, 국내외 시민사회에서는 ESG 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시민사회의 경우, 2017년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족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 및 'SDGs 다양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체계 구축'운동을 전개. **매년 시민사회 보고서를 발간.** 또한,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매년 '열린SDGs포럼'을 주최**하여 국내외 SDGs 이행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는 등 SDGs 이행 및 정부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전개.

□ 2030 SDGs 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실천과제

1. 주요 이슈에 대한 대중 공론화 추진

❍ 한국의 SDGs 이행 취약 목표(SDG 5, 10, 13, 14, 15)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슈 중심의 공론화 필요: 예) 에너지전환(태양광 및 풍력 시설 500GW 용량 설치를 위한 국토개발 계획, 전력산업구조 개편 관련 세부 이슈 등)

❍ 관심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론장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 따른 국조실 주최 숙의공론장 운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열린SDGs포럼(외교부-SDGs시민넷)’처럼 ‘민관협력사업’차원에서 우선 추진할 필요.

2. 주요 이슈 관련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추진
   - ❍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또는 합의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 당사자들의 ‘파트너십 사업’을 기획 및 추진 필요.
   - ❍ 예를 들어, 성남시의 자원순환가게의 경우, 성남시, 성남환경운동연합, 롯데케미칼 등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순환시스템(공급 및 유통망)을 구축한 파트너십 사업으로, SDG 8, 9, 11, 12와 관련.
   - ❍ 다만, 여러 주체들이 함께하는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트너십 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단위가 필요.

3.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법제도 재정비
   - ❍ 2019년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SDGs 실천 10년’을 선포했듯, 지방차원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
   - ❍ 예를 들어, 공공기관 건물 및 대규모 야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근거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4. 지방정부 자발적 실천 촉진 및 재정 지원 토대 마련
   - ❍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SDGs 추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동력 마련 필요.
   - ❍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사업 재원 및 기금’이 국제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이행재원을 조달하고, 국제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동력 마련 가능.

□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과제

1. 행정부서, 정부위원회, 시민사회 조직과의 역할 구분 필요
2. 숙의공론장 운영 및 의견수렴 주체는 “행정부”, 숙의공론장 참여 주체는 “이해관계자 그룹”
3. 정책조정 및 심의 주체는 “정부위원회”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지향 필요
5.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제언

①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추진 및 관리 지원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 지원

부 록

부록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군·구의 장은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

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

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말한다.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

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㉞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